규제영향분석서

보험업법 시행령

<목 차>

1.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신설
2.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자	이름	김기훈
	담당부서 (과)	금융혁신과		직급	행정사무관
	국장	권대영		연락처	02-2100-2625
	과장	김동환		이메일	2081045@mail.go.kr

2021. 01. 04. 작성

정책책임자직위 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
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신설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의2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제9조제2항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신설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2021.01.28 ~ 2021.03.09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규제의
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
및 정부개입
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개정('20.12.8)에 따라 보험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,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, 보험기간 등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과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, 보험기간, 보험금 상한액 등의 세부기준을 설정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
및
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예비사업자</td></tr>
<tr><td>9.도입목표 및
기대효과</td><td colspan="3">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규제의
적정성</td><td rowspan="5">10.비용편익분석
(단위:백만원)</td><td></td><td>비용</td><td>편익</td><td>순비용</td></tr>
<tr><td>피규제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피규제자 이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정성분석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11.영향평가
여부</td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>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기타</td><td>12.일몰설정
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13. 우선허용·
사후 규제
적용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/table>

	14.비용관리제 (단위:백만원)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간균등순비용
		적용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3조의2(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)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가. 생명보험업: 제1조의2제2항제1호의 보험상품 나. 손해보험업: 제1조의2제3항제6호, 제7호, 제9호 내지 제11호, 제13호 및 제14호의 보험상품 다. 제3보험업: 제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상품 2.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: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3.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금 상한액: 5천만 원 4.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: 500억 원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20억원을 말한다.

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현재 보험업법상 종합보험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**높은 자본금**(300억원)이 필요함에 따라 **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환경**

○ 이에 ‘20.12.8일 **보험업법 개정**을 통해 **소액·단기 보험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**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도입하고, **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**(최저자본금 등)

□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**소액단기보험 활성화** 및 **소비자보호**를 위한 **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**을 마련할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비교

o 규제대안의 내용

규제대안1	대안명	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신설
	내용	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**최저 자본금을 20억원**으로 하고, **생명·질병·상해, 책임·비용·동물·날씨 등의 다양한 보험상품**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, 보험기간은 **2년 이하의 범위**에서 **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**으로 설정

o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규제대안1	진입규제 완화로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가능	해당사항 없음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예비사업자	입법 예고('21.1.28~3.9)	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현행 종합보험회사의 **최저 자본금이 300억원**인 점을 감안하여 소액단기보험회사의 **안정적인 보험업 영위를 위한 최저 자본금**을 정하고, **고액·장기보장이 필요한 보험종목**(원자력·자동차 등)은 제외

3. 규제목표

□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**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**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**소비자 피해를 예방**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**최저 자본금**이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**현격히 낮아지는 점**을 감안하여 **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, 보험기간** 등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사항 없음

- **경쟁영향평가**

해당사항 없음

- **중기영향평가**

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을 위해 **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**하여 **세부기준을 마련**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- **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**

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을 위해 **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**하여 **세부기준을 마련**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① 규제 영역		
② 규제 방식		
③ 예비분석모델		
	판단 근거	
④ 대상 업종		
⑤ 예비분석내용		
⑥ 차등화적용 여부		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보험업 인가정책에 관한 것으로 **보험산업 건전성 및 보험계약자 보호**를 위해 **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**

- 일몰설정 여부

보험업 인가 세부기준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 부적절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해당사항 없음

분류	적용여부	적용내용/미적용사유
포괄적 개념 정의		
유연한 분류 체계		
네거티브 리스트		
사후 평가관리		
규제 샌드박스		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해외사례

일본은 소규모 공제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'06년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, 현재 **영업중인 보험회사의 평균 자본금은 25억원 수준**으로 확인

o 타법사례

해당사항 없음

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신설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0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(년)	할인율(%)	단위
	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 1 :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신설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·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금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인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규로 보험산업에 진입하려는 자에 적용되는 만큼 규제 준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행정적 집행가능성

금번 개정안은 보험업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**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**

o 재정적 집행가능성

예산 소요 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'20.12.8일 개정됨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, 반대의견 없음

2. 향후 평가계획

- 시행 이후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허가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

3. 종합결론

- 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았던 **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**하기 위해 **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세부 기준**을 마련할 필요

별 첨 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0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1 :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신설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 신설>

< 규제 개요 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기본
정보</td><td>1.규제사무명</td><td colspan="3">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</td></tr>
<tr><td>2.규제조문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2</td></tr>
<tr><td>3.위임법령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제120조의2</td></tr>
<tr><td>4.유형</td><td>신설</td><td>5.입법예고</td><td>2021.01.28 ~ 2021.03.09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규제의
필요성</td><td>6.추진배경
및 정부개입
필요성</td><td colspan="3">책임준비금은 향후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, 산출 방식이 복잡하고 수많은 가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동 가정 산출 기준이 없어 회사판단에 상당부분 의존</td></tr>
<tr><td>7.규제내용</td><td colspan="3">보험업법 개정('20.12.8일)에 따라 의무화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·적립의 적정성 외부검증과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마련</td></tr>
<tr><td>8.피규제집단
및
이해관계자</td><td colspan="3">보험회사</td></tr>
<tr><td>9.도입목표 및
기대효과</td><td colspan="3">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, 보험계약자 보호는 물론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규제의
적정성</td><td rowspan="5">10.비용편익분석
(단위:백만원)</td><td></td><td>비용</td><td>편익</td><td>순비용</td></tr>
<tr><td>피규제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피규제자 이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정성분석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11.영향평가
여부</td><td>기술영향평가</td><td>경쟁영향평가</td><td>중기영향평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td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기타</td><td>12.일몰설정
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tr><td>13. 우선허용·
사후 규제
적용여부</td><td colspan="3">해당없음</td></tr>
</table>

	14.비용관리제 (단위:백만원)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간균등순비용
		적용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3조의2(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) ① 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. 1.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. 생명보험, 연금보험, 자동차보험, 상해보험,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종목에 대해 허가받은 보험회사. 다만, 해당 보험종목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보험회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다. 1. 제63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2.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③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의 구체적인 내용,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Ⅰ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□ 보험업법 개정('20.12.8일)으로 보험사의 **책임준비금 평가금액에 대한 신뢰성 확보**를 위해 **외부계리업자**를 통한 **검증***(외부검증)이 의무화됨

* 계리업자 :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책임준비금 등 주요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을 수행

보험요율산출기관 : 보험산업 참조순보험요율 산출, 보험회사의 보험료·책임준비금 등 기초서류 확인 및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

□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**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**에 관한 **세부기준을 마련**하여 **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**할 필요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비교

o 규제대안의 내용

규제대안1	대안명	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
	내용	검증 대상을 **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**로 설정하고, 검증 항목을 **책임준비금 적정성 및 가정의 적정성**으로 정함

o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규제대안1	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	해당없음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
보험업계 등	입법 예고 ('21.1.28~3.9)	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'23년부터 **새로운 보험회계제도**(IFRS 17)가 도입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**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기준**을 마련할 필요

3. 규제목표

□ **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개선**하여 **보험계약자 보호**는 물론 **보험산업 전반**에 대한 **안정성** 및 **신뢰도 제고**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□ 보험회사별로 특화된 상품구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**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**하되 **제3자의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**으로서, 보험회사 **경영의 자율성을 보장**하면서 **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개선**할 수 있어 목적·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대기업인 보험회사(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, 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)에 대한 규제 강화로,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대기업인 보험회사(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, 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)에 대한 규제 강화로,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① 규제 영역		
② 규제 방식		
③ 예비분석모델		
	판단 근거	
④ 대상 업종		
⑤ 예비분석내용		
⑥ 차등화적용 여부		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자율적 책임준비금 적립을 허용하되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,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에 해당

- 일몰설정 여부

책임준비금은 매 결산시마다 적립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 부적절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여부

해당없음

분류	적용여부	적용내용/미적용사유
포괄적 개념 정의		
유연한 분류 체계		
네거티브 리스트		
사후 평가관리		
규제 샌드박스		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o 해외사례

- **캐나다 연방금융감독원(OSFI)의 가이드라인:** 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**모든 보험회사**는 정기적으로 **제3자 검증**(peer review)을 받고 있음

- **호주 건전성감독청(APRA)의 가이드라인: 감독청**은 지정한 **보험회사**에게 **제3자의 검증**을 받도록 **지시**

o **타법사례**

해당없음

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0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0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 1 :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이미 외부감사 등을 받고 있는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법인에 검증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o 행정적 집행가능성

보험회사 감독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므로,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

o 재정적 집행가능성

해당없음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보험업법 개정('20.12.8일)에 따른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없음

2. 향후 평가계획

-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시 이후 책임준비금 규모 변화를 점검할 계획

3. 종합결론

-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, 책임준비금 산출·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의 제3자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

별 첨 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(년)	할인율(%)	단위
2020	2020	10	4.5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1 :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1 :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>